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에 따라 홈플러스 세종점 사업조정에 대한 사업조정심의회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1월 26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## 홈플러스 세종점 사업조정 권고(안) 공고

### 1. 사업조정 신청개요

- 신청인 : 세종특별자치시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
- 피신청인 : 홈플러스 주식회사

### 2. 사업조정 권고(안)

홈플러스는 세종점의 개점으로 발생하는 중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회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아래와 같이 품목·수량 등을 제한하고, 일정매장을 축소하여 중소상인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한다.

- 홈플러스 세종점내 직영매장에서 담배판매를 금지하며, 소주(1병 기준 360ml) 및 맥주(1병 기준 500ml·640ml)는 6병 이상으로만 판매
- 물품 또는 용역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인쇄광고물(전단지)의 배포 금지  
(단, 설·추석 등 명절기간과 문화센터·임대매장 관련 내용은 제외)
- 4만원 이하의 구매고객에 대한 무료배달 금지  
(단, 설·추석 등 명절기간과 인터넷 주문은 제외)
- 세종점의 일정 판매면적을 축소하여 세종시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및 홍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제공(최소 165㎡ 이상) 하고, 제공 면적·제공일자 및 품목선정 등의 구체적인 세부 운영방안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의

### 3. 사업조정 권고(안) 유효기간

- 권고(안)을 통보한 받은 날로부터 3년